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089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할당관세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항목 상세화	3

I. 개요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089호)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인선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2. 26.

(3) 회 부 일 : 2026. 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할당관세로 인한 물품의 수급과 가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에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할당관세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항목 상세화

현행	개정안
☐ 재정경제부장관의 할당관세 관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제71조 제4항) ☐ 기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 보고사항 및 항목: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u>관세 부과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 포함</u>)	☐ 할당관세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항목 상세화 ☐ (현행과 같음) ☐ ‘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 <u>관세 부과 대상 물품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u> 관세 부과의 효과 등’으로 상세화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 이인선의원안 2026. 2. 26. 발의(의안번호 17089)

☐ 개정안은 할당관세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제 71조¹⁾제4항상 관세 부과의 효과 등 보고항목을 상세화하여 할당관세가 부과 대상 물품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시하여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①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세율을

1)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낮추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세율의 탄력적 적용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²⁾, 이를 할당관세 제도라고 함. 할당관세 부과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 또한 제한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국회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하는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의 목차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할당관세의 ‘부과 실적’과 ‘부과의 효과’ 등으로 구성됨.

[2024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 목차³⁾

I. 작성 경위 및 기준

II. 2024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III. 2024년도 할당관세 효과 분석

- <1.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한 할당관세 가격효과 분석>
- <2.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효과 분석>

(참고1) 품목별 할당관세 적용 세율 및 할당관세 지원추정액

(참고2) 품목별 수입가격 탄력성 추정

(참고3) 품목별 수입가격 인하에 따른 물가 인하 효과

2)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2020~2024) 할당관세의 부과 실적과 관련하여, ① 적용 품목은 대체로 산업경쟁력 강화 또는 취약산업 보호를 위한 소재·원료 품목 또는 물가안정 대응을 위한 품목 등이었고, ②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세수지원액) 등 통계는 다음의 표와 같음.

[2020년~2024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 및 세수지원액]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관세 수입액 (결산, 억원)(A)		70,585	82,270	103,241	72,882	69,723
할당 관세	품목 수	79개	92개	119개	117개	125개
	세수지원액 (억원)(B)	3,742	6,758	19,694	10,753	14,301
	전년대비 증가율	(△20.5%)	(80.6%)	(191.4%)	(△45.4%)	(33.0%)
관세 수입액 대비 세수지원액 비중(B/A)		(5.3%)	(8.2%)	(19.1%)	(14.7%)	(20.5%)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 연도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보고」에서 발췌·정리

□ 할당관세의 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회귀분석에 따른 효과 분석⁴⁾과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효과 분석⁵⁾을 통해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가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으며, 2024년 할당관세에 대한 효과 분석 결과는 별도첨부 1, 2와 같음.

3) 2025년 5월 제출 보고서 기준 목차이며, 기존 연도 제출보고서의 목차도 이와 유사함.

4) 5개년 월별 자료 기반으로 수입가격과 국내출고가격, 수입물품을 이용한 1차 생산품 가격 및 물가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분석

5)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24년) 분석을 통해 특정 물품의 수입가격 하락이 해당 물품과 연계된 산업의 가격경쟁력과 경제 전체의 소비자물가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추정

□ 관세 부과의 효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구체화하여 ‘관세 부과 대상 물품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항목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우선, 할당관세의 부과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그 보고사항을 상세화하여 정하는 것은 당초 제도 취지에 맞는 효과를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타당한 점이 있다고 보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법」⁶⁾은 법률에서 기본세율 등의 관세율을 직접 정하는 한편, 단기적인 경제·사회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포함한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 등에 세율 등의 사항을 일부 위임하고 있는데, 변화가 빨라지는 환경에 따라 탄력관세제도의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으며 그에 비례한 국회의 통제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할당관세 지원규모를 보면 세수지원액이 2020년 3,742억 대비 2024년 1조 4,301억으로 약 282% 증가하였고 관세 수입액 대비 세수지원액 비중, 즉 세수감소분의 비중도 2024년 20.5%까지 증가하였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세수감소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만큼 그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할당관세의 부과실적 및 결과를 국회 소관

6)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감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용역 결과의 요약본만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평가의 근거, 분석 과정 및 모형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워 평가 결과 원문 및 물량 산출·세율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하여 효과가 낮은 품목을 조정하는 등 환류를 강화할 필요에 대한 지적도 제기됨.⁷⁾

□ 다음으로, 개정안에서 추가하고 있는 보고 항목을 보면 관세 부과의 효과 등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관세 부과 대상 물품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⁸⁾

□ 추가 항목 중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국회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관련 실적 및 효과에 대한 보고서상 할당관세 적용 및 수입가격 인하에 따라 추정되는 가격 탄력성 및 물가 인하 효과 등의 항목(별도첨부 1, 2)으로 이미 보고되고 있다고 보임.

□ 물품 수급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할당관세 적용 목적이 원활한 물자수급 등임을 고려했을 때 할당관세 부과에 따른 물품 수급의 영향 등을 보고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재정경제부는 현행법에 따라 할당관세가 물품 가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고, 그간 할당관세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7) 국회예산정책처, 「할당관세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2025.6.24.

8) (현행) 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 포함 → (개정안) 관세 부과 대상 물품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 포함

주요 내용 요약본을 제출해왔으나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앞으로 할당관세 연구용역 보고서 원문을 같이 제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재정경제부에서 제출하는 할당관세의 효과분석 부분은 기본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등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된 결과로 보이므로, 향후 해당 할당관세 연구용역 보고서의 원문이 같이 제출된다면 개정안에서 법률로 명시하고자 하는 수급 등에 대한 영향 등도 보고될 것으로 보이고 할당관세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방법의 적정성 등도 깊이 있게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할당관세의 제도 운용 및 효과에 대한 국회의 실효성 있는 통제를 위해 보고사항을 법률로 상세화하는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별첨 1] 회귀분석으로 추정한 할당관세 효과 분석 (2024년)

참고 2

품목별 수입가격 탄력성 추정

□ 품목별 수입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국내출고가격 및 물가지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추정

<국내출고가격, 물가지수 등에 대한 단기 수입가격 탄력성>

번 호	품 명		탄력성					
			도매 가격	소매 가격	국내 출고 가격	1차가공품 국내 출고가격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1	원유	나프타 제조용	-	-	-	0.92***	-	0.69***
		프로판 제조용	-	-	-	0.29**	취사용: 0.10*** 차량용: 0.15***	0.26***
		부탄 제조용	-	-	-	0.34***	0.03	0.27***
2	LPG	프로판	-	-	0.18**	-	취사용: 0.07* 차량용: 0.11**	0.16**
		부탄	-	-	0.22***	-	-0.07	0.29***
3	LNG		0.16**	0.15**	-	-	-	-
4	과실	바나나	0.78***	0.25**	-	-	0.41***	-
		망고	0.39***	0.41**	-	-	0.18***	-
		파인애플	1.12***	0.32**	-	-	0.50***	-
5	사료 제조용	옥수수	-	-	-	0.17***	-	0.20***
		대두	-	-	-	0.14***	-	0.08**
		대두박	-	-	-	0.18***	-	0.18***
6	닭고기		0.47	-	-	-	-0.02	0.25
7	설탕		-	-	-	0.003	빵: -0.004 탄산음료: 0.03	0.02
8	옥수수 (가공용)		-	-	-	0.08	-	전분: 0.06*** 과당: 0.07**
9	당근		-	-	-0.01	-	-0.12	-

주: *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냄 (** p<0.01, ** p<0.05, * p<0.1)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 2025.5.

<국내출고가격, 물가지수 등에 대한 장기 수입가격 탄력성>

번 이	품 명		탄력성					
			도매 가격	소매 가격	국내 출고 가격	1차가공품 국내 출고가격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1	원유	나프타 제조용	-	-	-	0.78***	-	0.69**
		프로판 제조용	-	-	-	0.63***	취사용: 0.24*** 차량용: 0.32***	0.56***
		부탄 제조용	-	-	-	0.71***	0.16	0.61***
2	LPG	프로판	-	-	0.66***	-	취사용: 0.26*** 차량용: 0.34***	0.56***
		부탄	-	-	0.55***	-	0.21	0.77***
3	LNG		0.38***	0.35***	-	-	-	-
4	과실	바나나	0.40	0.06	-	-	0.25	-
		망고	0.27	0.28	-	-	0.32**	-
		파인애플	1.06	-0.11	-	-	0.71*	-
5	사료 제조용	옥수수	-	-	-	0.42***	-	-
		대두박	-	-	-	0.45***	-	-
		대두	-	-	-	0.57***	-	-
6	닭고기		0.62	-	-	-	1.48*	0.83
7	설탕		-	-	-	0.38*	병: -0.11 탄산음료: -0.04	0.03
8	옥수수 (가공용)		-	-	-	0.66***	-	전분: 0.23*** 과당: 0.30***
9	당근		-	-	0.62	-	-0.002	-

주: 1) *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냄 (** p<0.01, ** p<0.05, * p<0.1)

2) 일반적으로 장기 수입가격 탄력성은 6개월에 대한 누적 추정치를 의미

3) 망고의 경우, 누적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3개월에 대한 누적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어 본 표에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 발췌, 2025.5.

[별첨 2]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할당관세 효과 분석 (2024년)

참고 3 품목별 수입가격 인하에 따른 물가 인하 효과		
□ 물가파급효과 P^d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특정 품목의 수입가격 변화가 경제 전체의 가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추정 □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E_i는 산업연관표 품목 중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항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품목만을 선별하여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 내 가중치비율을 반영해 재추정		
(단위: %)		
품목명	물가 파급효과 (P_j^d)	가중치 비율이 적용된 소비자물가 파급효과 (E_i)
LNG	-0.0457	-0.0177
원유(나프타, LPG제조용)	-0.1147	-0.0426
LPG(프로판, 부탄)	-0.0043	-0.0015
과실	-0.0002	-0.0002
채소	-0.0002	-0.0002
사료	-0.0013	-0.0005
전분 및 당류	-0.0014	-0.0011
기타 식료품	-0.0015	-0.0012
과일·채소 가공품	-0.0042	-0.0032
설탕(정제당)	-0.0003	-0.0002
가금육	-0.0004	-0.0002
육가공품	-0.0002	-0.0001
조주정	-0.0041	-0.0019
주: 수입가격 1% 하락에 따른 소비자물가 파급효과를 추정하였으므로 효과의 부호가 음수(-)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 발췌, 2025.5.